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18 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 : 김도읍 • 권성동 • 박대출

구자근 • 조승환 • 곽규택

주진우 · 이성권 · 정희용

조지연 • 박형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,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.

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·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·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 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.

법률 제 호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제1조(「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
제2조(「농업협동조합법」의 개정)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- 제3조(「농약관리법」의 개정)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제4조(「동물보호법」의 개정)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피성년후견인
- 제5조(「수의사법」의 개정)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2. 피성년후견인
- 제6조(「식물방역법」의 개정)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제7조(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5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피성년후견인

제21조제1호 중 "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"을 "피성년후견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	제13조(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
등) ① 제11조에 따라 농식품	등) ①
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	
는 조합(이하 "농식품투자조합"	
이라 한다)을 결성한 자는 다	
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	
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	
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	
야 한다. 등록사항을 변경하는	
경우에도 또한 같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	3
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	
문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	
일 것	
<u>가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</u>	<u>가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</u>
<u>· 피한정후견인</u>	<u>견인</u>
나. ~ 바. (생 략)	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	제4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	
수 없다. 다만, 제10호와 제12	
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	
용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	2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는 피한정후견인	
3. ~ 12. (생 략)	3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	제4조(결격사유)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	
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	
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.	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	1. 피성년후견인
<u>견인</u>	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)	제19조(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른	
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	2. 피성년후견인
<u>견인</u>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	제5조(결격사유)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	
의사가 될 수 없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	2. 피성년후견인
<u>견인</u>	
3. · 4. (생 략)	3.・4. (현행과 같음)
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의2(결격사유) 다음 각 호	제40조의2(결격사유)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	
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	
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	
다.	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	1. 피성년후견인
<u>견인</u>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
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5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5조의5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	
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	
없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임원(이사 및 감사를 말한	2
다)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	
회사 또는 법인	
가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	<u>가. 피성년후견인</u>
<u>정후견인</u>	
나. ~ 라. (생 략)	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제2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21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	
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	
다.	
1. <u>피성년후견인 · 피한정후견인</u>	1. <u>피성년후견인</u>
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	
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